

수해농가 특별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건의안

의안 번호	30
----------	----

제안년월일 : '95. 9. 15.

제안자 : 농림수산위원장

1. 주 문

- 지난달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도내 농업시설물 및 농작물이 커다란 피해를 입어, 농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지원 요망
- "농어업재해대책법" 을 재해 농가의 실질적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상법" 으로 개정 및 "농업재해보험제도"의 조기 실시

2. 제안 이유

- 매년 각종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농업시설물과 농작물은, 현행 관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음
- 그러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농가 지원 기준은 생산자재비 원가에 불과하여, 실질적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재해농가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영농포기 및 실의에 빠져 있음
- 실의와 체념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재해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참고 사항

" 없 음 "

비닐하우스 166동, 산림시설 82개소 등이 파손되어,
일시에 커다란 천재불운(天災不運)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즐지에 막대한 재난을 당하여 실의와 체념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농촌이 겪는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되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뜻하지 않은 재해를 당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하여 신속한 복구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시고 영농자금 상환의 연기 및 생계비 보조의 확대,
그리고 특별영농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종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영농자재비 수준의
지원이 아닌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현행 『농어업재해
대책법』을 『농어업재해보상법』으로 현실에 맞게 과감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생계비 보조지원 기준은 농경지 2ha미만 경작자 중 50% 이상 피해
시에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영농경작 규모에 관계없이 작목별 피해액이 전액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 또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농경지 복구 비용 지원에 있어서는 현행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의
비율을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을 시설규모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농경지 복구 비용의 자부담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우리 농촌은 매년 각종 재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생계비 구호 차원의 지원만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농업분야의 자연 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제도』를 조기에 실시하여 농민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 회 의 장 관 님
 제 정 회 제 원 장
 농 림 수 산 부 장

오늘의 농촌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정도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수 없는 국가적 현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가꾼다는 정부정책이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지방의 중심 산업인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온 도민의 의지(意志)를 모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이 모든 사항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9. .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